

제6절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취지 기재례

1. 이사회결의부존재

☐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등 청구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법인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법인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임기가 만료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라도 후임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과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권 내지 이사회 의 소집권은 대표이사만이 가지고 있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이사 중 대표이사가 지명한 자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을 뿐이며,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이라 하더라도 감독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취임할 수 없고 이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종전의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된 것만으로 종전의 대표이사가 권한을 상실한다고 보면 후임 대표이사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할 때까지는 아무도 법인을 대표할 자가 없는 결과가 되어 법인의 업무수행이 마비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사도 아닌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고 하여 그를 이사회에서 선출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임기만료로 퇴임한 종전의 대표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도 가진다.

② 이사회 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제안하는 것이 임기만료된 대표이사의 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이미 이사회 의 결의에 의하여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었음에도 별다른 급박한 사정도 없이 그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스스로 소집하여 이를 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은 임기만료된 대표이사에게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참조판례]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개최된 의료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 유무

의료법인 이사회 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개최되었으며 총원 9인의 이사 중 7인의 이사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한 것이라면, 참석하지 아니한 2인의 이사 중 1인은 이미 이사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자이고, 나머지

1인은 이사로서의 권한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는 부존재한 결의로서 아무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428 판결)

❖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

1. 피고법인 이사회의 2008. 3. 10.자 법인해산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참조판례] 묵시적으로 법인 이사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자가 제기한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묵시적으로 법인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더 이상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로서는, 설령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결국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게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31478 판결)